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 규제 혁신 및 합리화 -

2022. 12. 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규제개선요구 현황 및 개선방향	2
III. 규제개선 주요 과제	4
IV. 향후계획	9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1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개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과제
 -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 조성
 - 투자 및 경영활동 전반에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 및 활력 제고

< 기존 ombudsman 제도를 통한 외투기업 규제개선 현황 >

- (개요)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해소 및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노력
- (현황) 최근 3년간 1,049건을 발굴하여, 자체처리 258건, 사실관계 오류 129건을 제외한 검토과제 662건 중 247건(37.3%)을 수용

발굴·접수	자체처리*	사실관계 오류**	소관부처 검토과제(662건)			
			수용	부분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1,049건	258건	129건	177건	70건	153건	262건

* 법령해석, 통계확인 지원 등 ombudsman실 상담서비스 **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을 잘못된 경우

- 새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추진

< 참고 :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

-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 '22.8.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경제 형벌규정 개선방안 발표
-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구성('22.8.31 발족) 및 **규제심판제도*** 도입
* 민간전문가로 규제심판부를 구성하여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혁신 권고

- 정부는 기존 규제발굴 시스템(ombudsman)과 병행하여 외투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통해 454건의 기업 의견을 수렴('22.6~9월)
 - ① 산업부는 5,600여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2.7~8월)를 실시, 응답률 제고를 위해 2,000여개사 유선 독려 → 205건 접수
 - ② 투자국가·업종·지역별 13차례 간담회('22.6~9월)* → 145건 접수

* (총리) 獨佛(6.23), 美(7.1), 반도체바이오(9.26) / (본부장) 美(6.7), EU(6.29), 日(7.13), 中(7.20) / (지역별) 서울(8.19), 부산(8.19), 충청(8.18), 경남(8.19), 전남(8.31), 경북(9.1)

③ 주한외국상의(주한유럽상의(ECCK) 발간 백서 등)에서 제기된 자동차·헬스케어 등 18개 산업군별 96건(신규 76, 계속 20) 검토('22.9월)

* 헬스케어 22건, 자동차 19건, 지재권 11권, 에너지환경 6건, 화학 5건 등

④ 최근 3년간 옴부즈만 발굴과제 중 미해결과제 266건을 재검토,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과제 25건을 1차 선별(산업부) → 소관부처 협의하 8건을 검토과제로 선정

* 낮은 효과성,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 혁신 저해, 지속 제기 등을 고려

○ 규제분야별 요구 현황을 분석하고, 개별 건에 대하여 소관부처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22.9~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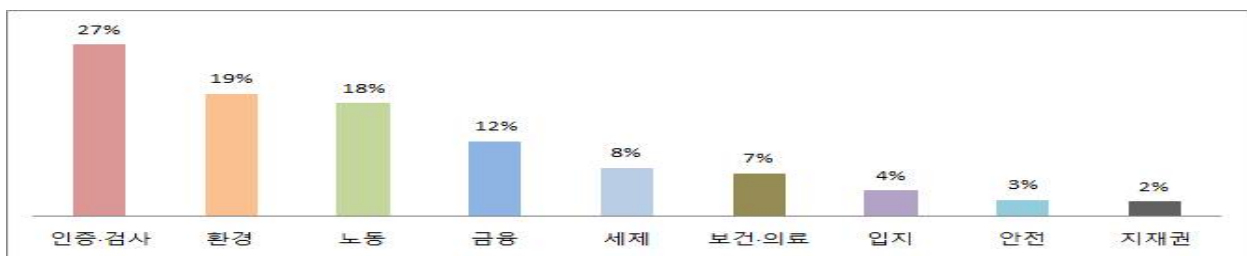
II. 외투기업 규제개선 요구 현황 및 개선방향

1. 규제개선 요구 현황 (총 454건 기업응답(중복포함)을 토대로 분류)

■ 규제분야를 환경, 노동, 안전, 보건·의료, 인증·검사, 금융, 세제, 입지, 지재권 9가지로 구분

□ 외투기업은 인증·검사(27%), 환경(19%), 노동(18%), 금융(12%) 등의 순서로 규제개선을 요구

< 분야별 조사 결과 >



○ 인증·검사 관련하여 불분명하거나 획일적인 기준, 중복인증 또는 복잡한 인증절차에 대한 규제개선을 건의

- ▶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부·고용부의 중복 허가 개선
- ▶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수입승인 절차 간소화
- ▶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 ▶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예외적용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험 절차·조건의 일원화
- ▶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 환경·노동 분야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애로를 제기하며, 유연한 제도운용 제언

- ▶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필요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금융·세제·입지 등 정부지원과 관련한 자격 요건의 제한 완화 또는 범위 확대 등도 제기

- ▶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 제고
- ▶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시설 공급 허용

2. 평가 및 규제개선 방향

- 대규모 조사를 통해 외투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평가
- 조사 결과, 경영활동에 애로를 야기하는 규제 제기가 대다수이며, 외투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개선 제기는 많지 않음
- 총 454건의 기업응답에 대해 중복제기 건을 통합하고, 구체적 규제가 아닌 단순건의 사항은 제외하여 132개 과제 도출 → 40건 개선방안 마련

검토과제	수용	부분수용	기조치	별도검토	장기검토	수용불가
132건	32건 (2건 통합)	8건	19건	6건	20건	45건

※ 검토과제 중 절반(67건)에 대해 긍정적 검토(중장기검토 및 수용불가 제외)

- 소관부처별 검토,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40건)
 - 복잡·불분명한 인증·검사 제도는 간소하고 명확하게,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목적에 비해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비
 -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절차 또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
- 규제를 잘못 해석해서 애로를 건의한 경우, 제도 설명 또는 유권 해석 등 제기 기업에 안내 등 기조치(19건)
- 경제규제혁신 TF(기재부), 신산업규제혁신위(국조실), 화학안전포럼(환경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고용부) 등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사안은 별도 검토(6건)
-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현재 수용이 곤란한 과제의 경우도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를 활용하여 추가 재검토 추진(65건)

III. 규제개선 주요 과제(10개 사례) ※ 총 40개 과제 개선방안 별첨

인증·검사 제도 합리화

①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부·고용부의 중복 허가 개선 (환경부·고용부)

현황	▶ (규제)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부의 수입 승인을 득한 후, 환경부에 수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7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애로) 개별 수입건에 대해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최대 2개월 소요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년)] 고용부 금지물질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경우, 환경부 수입 승인을 받으면 고용부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

A사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식각 및 식각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화학 수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부의 산안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취득한 후, 이를 환경부에 제출해 화관법의 수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든다.



이에 화관법에 따른 금지물질에 대해 환경부의 수입승인을 받으면 고용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복 허가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부분 연구용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 중복허가 개선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량의 연구개발용 MSDS 비공개심사 제도 완화 (고용부)

현황	▶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영업비밀 보호 필요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14일)를 거쳐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112조 ▶ (애로) 연구개발용 소량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승인 심사 등 행정적 절차 이행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4Q)] 소량(예: 연간 100kg 이내) 취급되는 연구개발물질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

B사는 광학필름, 테이프, 접착제 등 다양한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R&D 중심의 회사 특성상 신속한 제품 개발과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MSDS 등록 작업과 영업비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연구개발물질에 대해 ①MSDS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②비공개 심사기간 단축(28일→14일) 및 ③제출자료를 간소화한 바 있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시설을 갖춘 연구실 내에서 분석용으로만 소량 사용되는 샘플 등의 경우 영업비밀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과기부)

현황	▶ (규제)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경우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인증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형식기호(주파수, 전력, 전파형식 등)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인증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1항 1호 및 2호 ▶ (애로) 既인증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한 신규 인증이 필요하여 업체의 시험·인증비용 부담 초래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1Q)] 형식기호의 변화여부와 관련 없이, 신규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C사는 최근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용 프린팅 솔루션,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방송통신 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을 추가**하였는데, 기존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신규 평가를 받아야** 해서 **시험인증 비용 부담과 비효율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령상 부품소자의 추가 등 **하드웨어가 변경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추가한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형식기호(기기부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형식기호(기기부호)의 영향 여부와 관련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업의 **시험·인증 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예외적용 (산업부)

현황	▶ (규제) 최대 측정용량이 1kg 초과인 계량기는 형식승인 필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별표7) ▶ (애로) 가정용의 경우에도 형식승인 필요하여, 시장 진입비용 과다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4Q)] 형식승인 대상을 상거래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은 형식승인 제외

D사는 국내에 '가정용 저울'을 공급하는데 주로 요리용 저울로 최대 측정 용량이 1~3kg 이다. 최대 측정 용량이 1kg 이하인 저울은 수입 요건이 단순한 반면, **1kg을 초과하는 저울은 계량기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형식승인 대상을 상거래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은 형식승인에서 제외**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가정용 저울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험 절차·조건 일원화 (환경부)

현황	▶ (규제) 환경부 고시*와 환경·산업·국토부 공동고시**에서 각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및 별표4 ▶ (애로) 공동고시는 국외 표준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는 이보다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시험하는 사례 발생 우려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4Q)] 환경부 고시도 공동고시와 같이 <u>국외 표준 규정(SAE J1634/SAEJ1711)에 맞도록 개정</u> 추진 * 오버나이트 충전 허용, OBD를 통한 전류/전압 측정 허용 등

E사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한다.

그런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과 전류, 전압 측정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시험절차를 거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는 업계가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제정한 공동고시에 맞추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조건, 전류 및 전압 측정방법 등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⑥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토부)

현황	▶ (규제)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부 항목에 대해 유엔 유엔경제위원회(UNECE)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도 국내 시험성적서와 동일하게 인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4 ▶ (애로) 국내 안전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험성적서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일부 항목이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별도 시험 필요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3Q)]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4를 개정하여 <u>UNECE 기준과 조화</u>되도록 추진

F사는 자동차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유엔 유엔경제위원회(UNECE)의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받아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준으로 인정되는 UNECE 시험성적서 항목이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별도의 국내 시험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 현행 규정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23년까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과 유럽 안전기준의 시의적절한 조화를 통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규제 합리화

㉞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환경부)

현황	▶ (규제) 휘발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고정체적, 가변체적) 중 고정체적 산출식만 인정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73호) 별표 1 ▶ (애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소화된 측정방법(가변체적)이 인정되지 않아 혼란유발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4Q)]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포함할 계획 * 미국 규정(US 40 CFR 86.143-96)과 규정 조화

G사는 국제기준과 다른 한국의 자동차 증발가스(탄화수소) 테스트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등은 '가변체적'에서 가스 질량을 산출하는 간소화된 계산식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테스트 계산식에서 '고정 체적(부피)'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고시 개정을 통해 증발가스 측정방법에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련 규정을 미국 등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제작사의 시험비용 및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㉟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환경부)

현황	▶ (규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해진 기간(영업허가 대상 매년, 비대상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2항 ▶ (애로) 매년 정기검사 이행으로 사업장 부담
개선방안	▶ [법령 개정('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1회/1~4년 실시로 완화

H사는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 제조업체로 화관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승인 후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현황, 배관 설비, 경보설비, 비상전력, 환기 및 배출설비 등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과 검사 비용 등 사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1년(비허가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검사 비용 및 행정처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지원제도 개선

㉑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 제고 (산업부)

현황	▶ (제도)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사전심사 가능 * 현금지원 운영요령 제14조1항 ▶ (애로) 사전심사 제도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검토 단계에서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여부·규모를 알기 곤란
개선방안	▶ [공고 개정('23.1Q)] ①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소액 지원의 경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

J사는 한국으로의 추가 투자를 위해 해외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투자시 현금지원 가능여부, 지원규모 등 인센티브 예측이 어려워 해외 본사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①우선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 사전에 현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소액 지원의 경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기존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㉒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시설 공급 허용 (산업부)

현황	▶ (규제) 경제자유구역 부지매입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제공이 불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6항 ▶ (애로) 특수관계인이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투기업인 경우에도 부지 제공을 제한하여, 외투기업간 경영효율화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2Q)] 경자구역 동일 부지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외투기업)간 시설의 통합·운영 허용

J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장비,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한국내 3개 계열사를 운영 중이다. 시너지효과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3개 계열사 간 생산과 연구시설을 통합하려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공급규정에 따라 부지매입 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시설 공급이 불가하여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에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의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인 경우 매입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동일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의 통합·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IV. 향후 계획

□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한 40개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규제 소관부처 주도 하에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

<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 >

산업	환경	식약	복지	과기	국토	고용	특허	질병	행안	해수	금융	농림
10	10	5	2	2	2	2	2	1	1	1	1	1

○ 과제별 추진상황 및 완료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현안관계장관 회의에 이행현황 보고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선 등 3개 과제 개선완료('22.11월 기준)

□ 65건의 중장기 검토 및 부처 불수용 과제는 새정부 규제혁신제도를 통해 개선 가능성 및 개선방안 검토

○ 경제 규제혁신TF 및 규제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범정부적으로 추가 개선 가능성 검토

< 규제심판제도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관부처 검토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 판단인 경우, 요건 충족시 규제심판부 회부	의견청취 등 숙의후 필요시 규제개선 권고	부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개위 심사 및 재권고	필요시 추가 검토 및 개선안 확정

○ 기술의 발전,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 노력 지속

□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추진 등 외국인 투자환경 지속 개선

○ 주요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 기업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애로해소 추진

○ 규제·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정책홍보 강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

참고 1

40개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1. 인증·검사제도 합리화(14개)			
① 전기자동차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 명확화		환경부	'23.2Q
②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토부	'23.3Q
③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험 절차·조건 일원화		환경부	'23.4Q
④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비공개 승인심사 완화		고용부	'23.4Q
⑤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부·고용부의 중복 허가 개선		고용부	'23년
⑥ 수입 백신 제조관리 기준(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제도 개선		식약처	'23.3Q
⑦ 의료기기 GMP 인증 상호인정 추진 및 심사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식약처	'23.1Q
⑧ 의료기기 인증·허가·신고 제품의 갱신 절차 간소화		식약처	'23.4Q
⑨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과기부	'23.1Q
⑩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방법 확대		과기부	'23.1Q
⑪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예외적용		산업부	'23.4Q
⑫ 유아용 섬유 제품의 해외 인증기관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	'22.4Q
⑬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		행안부	'24.2Q
⑭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선 (完)		해수부	'22.10
2. 환경 규제 합리화(8개)			
① 친환경차 보급 중장기 목표 수립		환경부	'22.4Q
②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환경부	'23.4Q
③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부	'22.4Q
④ 국제평가물질 제도 개선		환경부	'23.1Q
⑤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판매 유예		환경부	'22.4Q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환경부	'24년
⑦ 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23.4Q
⑧ 포장검사방법 제품 표면 표시 의무화		환경부	'23.1Q~
3. 투자 관련 지원제도 개선(6개)			
①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산업부	'23.1Q
② 재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개선		산업부	'23.2Q
③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관계회사에 부자·시설 공급 허용		산업부	'23.2Q
④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전용 REC 시장 도입 (完)		산업부	'22.11
⑤ 해상풍력 계통용량 선점 방지 제도 마련		산업부	'23.2Q
⑥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 주체 명확화		산업부	'22.4Q~
4. 행정절차 합리화(6개)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처리절차 정비		산업부	'23.1Q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환경부	'23.4Q
③ 자동차 무상점검·수리내역 자료 제출 기한 합리화		국토부	'23.3Q
④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복지부	'23.4Q
⑤ 백신 신규도입시 백신 업계 참여절차 마련		질병청	'23.1Q
⑥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절차 개선		농림부	'22.4Q
5. 기타(6개)			
① 주류 표시사항 표기방법 QR 코드 활용 도입		식약처	'24년
② 식품의 "무가염" 표시 기준 마련한 투명성 제고		식약처	'23.5월
③ 보험업법령 개정사항 관련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	'23.2Q
④ 복합 만성 대사성 질환 의약품 급여대상 포함 (完)		복지부	'22.4Q
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청	'24년
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 마련		특허청	'23년

참고 2

40개 과제별 세부내용

1 인증·검사제도 합리화

① 전기자동차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 명확화

현황	▶ (규제)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애로) 전기차의 경우 인증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2Q)] 전기차 인증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 목록 명확화
이행계획	('23.2Q) 고시 개정 추진

②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현황	▶ (규제)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부 항목에 대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도 국내 시험성적서와 동일하게 인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4 ▶ (애로) 국내 안전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험성적서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일부 항목이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별도 시험 필요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3Q)]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4를 현행 규정과 UNECE 기준이 조화되도록 개정
이행계획	('22.4Q) 별표4 항목별 존치여부 등 개선방안 마련(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용역(~'22.12월)) ('23.1Q) 별표4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23.3월) ('23.2Q)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3.4~6월, WTO/TBT에 해당되어 60일 행정예고) ('23.3Q)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 및 개정 완료('23.9월)

③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험 절차·조건 일원화

현황	▶ (규제) 환경부 고시*와 환경·산업·국토부 공동고시**에서 각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DC 충전 에너지 측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및 별표4 ▶ (애로) 공동고시는 국외 표준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는 이보다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시험하는 사례 발생 우려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4Q)] 환경부 고시도 공동고시와 같이 국외 표준 규정(SAE J1634/SAEJ1711)에 맞도록 개정 추진 * 오버나이트 충전 허용, OBD를 통한 전류/전압 측정 허용 등
이행계획	('23.2Q)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 ('23.4Q)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④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심사 완화	
현황	▶ (규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영업비밀 보호 필요시 MSDS 비공개 승인 심사(14일)를 거쳐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 (애로) 연구개발용 소량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승인 심사 등 행정적 절차 이행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4Q)] 소량(예: 연간 100kg 이내) 취급되는 연구개발물질 등에 대해서는 <u>비공개 승인심사를 완화</u>
이행계획	('23.上)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비공개승인 완화방안 의견수렴 및 국회 등 유관기관 협의 ('23.下) 법령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23.12)

⑤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부·고용부의 중복 허가 개선	
현황	▶ (규제)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부의 수입 승인을 득한 후, 환경부에 수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애로) 개별 수입건에 대해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최대 2개월 소요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년)]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에 대해 <u>환경부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u>
이행계획	('23.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예고 ('23.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⑥ 수입 백신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제도 개선	
현황	▶ (규제) 백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를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약사법」 제42조1항, 제42조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1항6호, 제60조1항5호, 2항1호 ▶ (애로) 수입백신의 경우 제조소 GMP 평가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해당국가뿐 아니라 국내에서 중복으로 실시하게 되어 과도한 시간·비용 발생
개선방안	▶ [제도보완('22~)] EU와 GMP 평가 및 품질검사 분야 상호인정(MRA) 추진 ▶ [고시 개정('23.3Q)]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u>백신의 완제품 품질 시험시 면제항목 설정</u>
이행계획	('22.4Q) 관련 전문가 및 업계와 추진방안 논의(백신 완제품 품질시험 면제항목 설정) / EU와 GMP 평가 및 품질검사 분야 상호인정(MRA) 추진 관련 연구사업 ('23.1Q) 백신의 완제품 품질시험 면제 방안 및 고시 개정(안) 마련(~'23.3월) ('23.2Q)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3.6월) ('23.3Q) 고시 개정 완료(~'23.9월)

⑦ 의료기기 GMP 인증의 상호인정 추진 및 심사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현황	▶ (규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정기적(매 3년)으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애로) 해외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판매시 별도의 국내인증도 필요하며, GMP 적합성 인정 심사 처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없음
개선방안	▶ [제도보완(22~)]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정회원 가입을 통해 회원국간 GMP 상호인정을 추진 * 5개국(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미국) 참여중 ▶ [시스템 구축(23.1월)] GMP 적합성인정 심사 처리기한 준수 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22.4Q~) MDSAP 정회원 가입 지속 추진 - 제조업체 대상 MDSAP 인증 관련 교육 실시(22.11.30.) - MDSAP 심사사례 가이드라인 2종 발간 및 MDSAP 발행문서 10종 번역·배포(22.11.) - MDSAP 활용보고서 국제규제당국위원회로 제출(22.11.) - 美FDA, MDSAP 국제포럼 참석 및 발표(22.12.1~2) (23.1Q) MDSAP 심사사례 가이드라인 1종 발간(23.3.) (23.4Q) MDSAP 규제당국자 초청세미나 개최(23.12.) * 제조업체 대상 MDSAP 인증 관련 교육, MDSAP 발행문서 번역·배포, 활용보고서 제출 등을 매년 실시(23.11월 예정) (22.4Q) GMP 적합성인정 처리현황 온라인 공개 시스템 평가·검증 진행 (23.1Q) GMP 적합성인정 처리현황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 완료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3월 예정))

⑧ 의료기기 인증·허가·신고 제품의 갱신 절차 개선	
현황	▶ (규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갱신을 받아야 함 * 「의료기기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 (애로)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 등급을 차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갱신 시에는 등급과 상관없이 자료제출요구,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시보다 갱신을 위한 제출자료가 많아* 업계의 부담 발생 * (신고) 신청서, (갱신) 신청서,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안전성 정보 등 6종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4Q)] 1등급 의료기기 갱신시 제출자료 간소화 * '안전성 정보'와 같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출자료 간소화
이행계획	(23.1Q) 품목갱신 개선안 의견수렴 협의체 운영(~23.3월) (23.2Q) 갱신절차 완화 등 개선방안 수립(~23.5월) 및 업체 대상 공청회(23.6월) (23.3Q) 의료기기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23.9월)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등 (23.4Q) 갱신시 제출자료 간소화 * 1등급 제품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등 일부자료 제출 면제

㉑ 신기술 추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개선	
현황	▶ (규제)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경우 변경사항만 반영하여 인증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형식기호(주파수, 전력, 전파형식 등)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인증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1항 1호 및 2호 ▶ (애로) 既인증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한 신규 인증이 필요하여 업체의 시험·인증비용 부담 초래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1Q)] 형식기호의 변화여부와 관련 없이 적합성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이행계획	('22.4Q) 고시 개정안 마련(~'22.12월) ('23.1Q)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23.1월~3월), 고시 개정 완료('23.3월)

㉒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방법 확대	
현황	▶ (규제)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은 제조년월, 로트번호 등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를 다양하게 인정하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의 제조시기는 제조년월로만 표기 가능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1항, 별표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23 ▶ (애로) 전자파 적합성과 전기안전의 적합성 평가기준 상 제조시기 표시 방법이 상이하어 두 가지 적합성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시기 표시 혼란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1Q)] 적합성평가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방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이행계획	('22.4Q) 고시 개정안 마련(~'22.12월) ('23.1Q)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23.1월~3월), 고시 개정 완료('23.3월)

㉓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예외적용	
현황	▶ (규제) 최대 측정용량이 1kg 초과인 계량기는 형식승인 필요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별표7) ▶ (애로) 가정용의 경우에도 형식승인 필요하여, 시장 진입비용 과다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4Q)] 형식승인 대상을 상거래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은 형식승인 제외
이행계획	('22.4Q) 형식승인 제외 등 법제화 방안 마련(법제연구원 연구용역(~'22.11월)) ('23.1Q) 법률 개정안 마련(~'23.1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3.3월) ('23.2Q)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4~5월), 규제심사('23.5~6월) ('23.3Q) 법제처 심사('23.7~8월), 국회 제출('23.9월)

⑫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시험·검사가 가능한 해외 인증기관 관련 정보 제공	
현황	▶ (규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국외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국외기관과 상호인정계약 체결 필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22.8월 시행) ▶ (애로) 상호인정계약 체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도 활용 애로
개선방안	▶ [정보제공('22.4Q)] 상호인정계약 체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하고, 상호인정계약 체결한 해외 인증기관 온라인 공개
이행계획	('22.4Q) 제품안전 관련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등)에 관련 내용 게시

⑬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	
현황	▶ (규제) 승강기 안전인증과 설치검사 등의 사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하며,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 제36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 (애로) 인증 수수료 관련 업계 부담 가중
개선방안	▶ [법령 개정('24.2Q)]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안전인증 개편 TF"를 운영하여 인증 절차, 방법, 비용 등을 재검토(~'23.上), 이후 법령 개정 추진('23.下~)
이행계획	('23.2Q) "승강기 안전인증 개편 실무 TF" 운영종료 및 개선방안 마련('23.6월) ('23.4Q) 정부입법계획 제출('23.11월) ('24.2Q)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4.6월) * 국회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

⑭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선	
현황	▶ (규제) 해상교통로와 풍력단지 간격, 선박의 안전통제 조치 등에 대해 UN해양법 협약, IMO 지침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설정해야 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 (애로) 해역별로 해상풍력 발전기 수, 발전단지 면적 등이 상이한 바, 일률적으로 국제기준 적용시 충족이 어려움
개선방안	▶ [고시 개정('22.10)]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
이행계획	('22.10월) 고시 개정 완료(10.12)

② 환경 규제 합리화

① 친환경차 보급 중장기 목표 수립	
현황	▶ (규제) 업계 의견수렴 거쳐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수립·공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애로) 산업계의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최소 2년)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중장기 보급목표 제시 필요 * 현재 2개년도('21~'22년) 보급목표만 제시
개선방안	▶ [제도 보완('22.4Q)]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목표안('23~'25년) 확정
이행계획	('22.4Q)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목표안('23~'25년) 확정

②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현황	▶ (규제) 휘발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고정체적, 가변체적) 중 고정체적 산출식만 인정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73호) 별표 1 ▶ (애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소화된 측정방법(가변체적)이 인정되지 않아 혼란유발 * 실제 인증 시에는 가변체적 방식 인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4Q)]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포함 * 미국 규정(US 40 CFR 86.143-96)과 규정 조화
이행계획	('23.2Q)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 ('23.4Q)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③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 (규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진행 *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 (애로) 민간사업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관계 법령 적용이 가능하여 보상 관련 사업자-주민간 이견발생
개선방안	▶ [가이드라인 마련(~'22년말)] 법령상 보상원칙, 주민수용성 확보 를 위한 민관 지역협의회 구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
이행계획	('22.4Q)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마련(~'22.12월)

④ 국제평가완료물질 추가지정	
현황	▶ (규제)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되어 공개된 경우 해당 유해성 자료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애로)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었으나, 국제평가물질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추가시험 실시 및 승인에 대한 부담
개선방안	▶ [정보제공('23.1Q)] 산업계의 원활한 승인신청 준비를 위해 '24년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u>국제평가완료물질 및 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사전에 공지</u>
이행계획	('23.1Q)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국제평가완료물질 및 자료 제출 면제 범위 사전 공지

⑤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승인유예기간내 수입 · 제조 · 판매 허용	
현황	▶ (규제) '22년까지 승인된 살생물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이 유예됨 *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 ▶ (애로) 살생물제품의 승인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 유예기간('24년)내 제품유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유통 금지를 우려
개선방안	▶ [정보 제공(~'22.4Q)] 승인받은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이지만 제품승인 계획이 없는 업체에 대해 <u>제품승인 미신청사유서*</u> 제출 시 '24년 12월 까지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안내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사유와 유예기간인 '24년 12월 이후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이행계획	('22.4Q) 해당 업체에 제품승인 미신청사유서 제출 시 '24년 12월까지 제조·수입·판매·유통 가능 안내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현황	▶ (규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해진 기간(영업허가 대상 매년, 비대상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애로) 매년 정기검사 이행으로 사업장 부담
개선방안	▶ [법령 개정 추진('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1회/1~4년 실시로 주기 완화
이행계획	('23.3Q) 민·산·관 합동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정책개선 방향 협의 후 구체적 방안 마련 → 화관법 개정 추진

⑦ 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 (규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과대포장하지 않도록 포장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지켜야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 (애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이 존재하여 포장별로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현장애로 발생
개선방안	▶ [가이드라인 마련('23.4Q)]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 등이 현장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측정하는 데 활용 가능한 과대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이행계획	('23.4Q) 제품포장 간이측정방법에 관한 해설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택배 포장방법에 관한 간이측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23.12월)

⑧ 포장검사방법 제품 표면 표시 의무화	
현황	▶ (규제) 소비자의 제품 선택 시 환경위해물품 구입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21.1.28. 송언석 의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애로) 포장방법 사전검사 및 표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비용 과다
개선방안	▶ [수정안 추진('23.1Q~)]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을 표시하는 것 외에 포장 정보관리시스템(가칭)에 등록 하는 방안을 추가 또는 대체
이행계획	('23.1Q) 포장방법을 포장정보시스템(가칭)에 등록하는 것으로 의원발의안 수정 의원실 협의('23.3월) 및 법률개정 추진('23.3~)

③ 투자 관련 지원제도 개선

①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 제고	
현황	▶ (제도)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사전심사 가능 * 현금지원 운영요령 제14조1항 ▶ (애로) 사전심사 제도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검토 단계에서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여부·규모를 알기 곤란
개선방안	▶ [공고 개정('23.1Q)] ① 국가전략기술 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② 소액 지원 의 경우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
이행계획	('22.4Q) 사전심사 제도 개선방안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마련('23.1Q)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완료('23.1월)

㉔ 재투자 신고시 제출서류 개선	
현황	▶ (규제)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시, 투자계획서 제출 필요 * 외측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다목, 동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 (애로) 투자 신고단계에서는 구체적 집행 계획이 불확정적이거나, 투자 내용이 대외비로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투자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서 작성에 애로 발생
개선방안	▶ [외측법 시행규칙 개정('23.2Q)]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시 필요한 투자계획서 양식 마련 또는 첨부 서류 간소화
이행계획	('23.1Q)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계획서 양식 마련 및 규제심사 ('23.2Q)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23.3~4월), 법제처 심사 및 관보게재(~'23.6월)

㉕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매입 외투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시설 공급 허용	
현황	▶ (규제) 경제자유구역 부지매입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제공이 불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6항 ▶ (애로) 특수관계인이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투기업인 경우에도 부지 제공을 제한하여, 외투기업간 경영효율화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
개선방안	▶ [경자법 개정('23.2Q)] 경자구역 동일 부지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외투기업)간 시설의 통합·운영 허용
이행계획	('22.12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23.1Q) 개정법률안 법안 상임위 상정 ('23.2Q) 법안 소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

㉖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전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도입	
현황	▶ (규제) 에너지원 구분없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을 공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 ▶ (애로) 해상풍력 시장규모 및 경제성 파악이 어려워 투자결정 애로
개선방안	▶ [제도신설('22.4Q)] 풍력 경쟁입찰 시장('22.9 신규개설)을 통해 풍력 입찰 물량을 공고(550MW 규모)하고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
이행계획	('22.11) 이행 완료(사업자 선정)

⑤ 해상풍력 계통용량 선점 방지 제도 마련	
현황	▶ (규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 도입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 ▶ (애로) 송전시설이용을 계약한 성실사업자 보호 또는 불성실사업자 이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 리스크 우려
개선방안	▶ [한전 약관 개정('23.2Q)] 송전시설이용 계약 단계 보증금제도 도입 및 불성실 사업자 이용계약 해지 등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행계획	('22.4Q)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마련(~'22.12) ('23.1Q)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3.1~3) ('23.2Q)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 시행('23.4)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전기위원회 안건상정('23.5) 전기위원회 심의 및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23.6)

⑥ 지자체간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해역에서의 전기사업허가 주체 명확화	
현황	▶ (규제) 3MW 이상 규모의 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은 산업부(전기위원회)이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자 * 전기사업법 제7조, 제주특별법 제303조 ▶ (애로) 제주도 인근 해역중 지자체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발전사업허가 주체도 미정
개선방안	▶ [이해관계자 협의('22.4Q~)] 지자체(제주도, 전남), 사업자 등 <u>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허가 주체 지정 추진</u>
이행계획	('22.4Q~)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추진

4 행정절차 합리화(절차 간소화, 규정 명확화, 투명성 강화 등)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처리절차 정비	
현황	▶ (규제) 자동차 제작자(수입 포함)는 자동차 판매 전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 결과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등급이 잘못된 경우 시정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애로) 신고 처리기간 지연에 따라 수입차의 통관·판매 지연 애로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1Q)] 신고 처리기간(14일 이내 처리)을 명문화
이행계획	('22.4Q) 에너지공단,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2.12) ('23.1Q) 고시 개정안 마련 및 고시 개정(~'23.3)

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현황	▶ (규제) 자동차 제작자는 판매하는 차량에 부여된 평균온실가스·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달성해야 함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애로) 자동차 제작자의 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달성실적(초과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애로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4Q)] 자동차 제작자에 <u>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실적 확인서 발급</u> 규정 마련
이행계획	('23.上)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 ('23.下)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㉕ 자동차 무상점검·수리내역 자료 제출 기한 합리화	
현황	▶ (규제) 자동차 제작자는 매월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을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함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 (애로) 자동차 제작자와 정비사업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정비 사업자로부터 정비 종료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u>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담</u>
개선방안	▶ [법령 개정('23.3Q)] 자동차 무상수리·수리내역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ex. 익월 10일이내 → 익월 20일이내 또는 분기별)
이행계획	('23.1Q)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방침 확정(~'23.3) ('23.2Q) 입법예고, 규제심사(~'23.6) ('23.3Q) 법제처 심사, 개정안 공포·시행(~'23.9)

㉖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 투명성 제고	
현황	▶ (제도) 급여기준 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학회, 임상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평가(80~150일)하며, '약제업무 진행상황 조회시스템'을 통해 처리단계* 안내 * 접수→보완자료 요청→학회의견요청→실무검토→위원회 심의→복지부 보고→처리완료 ▶ (애로) 급여기준 확대 검토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움
개선방안	▶ [시스템 개선('23.4Q)] 각 단계별 상세한 진행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약제업무 진행상황 조회시스템 개선 추진
이행계획	('23.1Q)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23.2Q) 유관기관 의견 수렴 ('23.3Q) 약제업무 진행상황 조회시스템 중간 점검 ('23.4Q) 약제업무 진행상황 조회시스템 개선 완료

⑤ 백신 신규도입 및 후보백신 선정시 백신 업계 참여절차 마련	
현황	▶ (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신규 백신 도입시 후보 백신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평가 * 국가예방접종 신규백신 도입평가 매뉴얼 ▶ (애로) 신규 백신 도입절차에 백신 제조·수입자의 의견제출 창구 부재
개선방안	▶ [절차 마련('23.1Q)]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연구 시 후보 백신 선정단계('23.1월~3월, 수요조사)에서 백신 제조/수입사의 의견 제시 방법 마련
이행계획	('22.12월)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연구의 후보백신 선정단계에서 백신 제조/수입사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22.12월~'23.1월) 연구 수행과정에서 백신 도입 수요조사 시 백신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과정 수행(서면 수요조사 등)

⑥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절차 개선	
현황	▶ (규제) 시험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 시 선적 전 검역증명서, 생산업체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고시) ▶ (애로) 최근,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선적 후 발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개선방안	▶ [고시 개정('22.下)] 선적 前 발급하는 제출서류(검역증명서, 생산업체 증명서 등)에 대해 선적 後 발급된 서류도 인정토록 개선
이행계획	('22.12) 고시개정 완료예정

5 기타

① 주류 표시사항 표기방법 QR 코드 활용 도입	
현황	▶ (규제) 식품 제조업자 등은 제품명, 내용량, 식품유형, 업소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13개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할 의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별표3(식품등의 표시방법) ▶ (애로) 업계에서는 원재료 등 표시사항 변경시 포장지 교체비용 발생
개선방안	▶ [시범사업 및 법제화('24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22.9월~)을 토대로 효과성 검증 및 미흡점 보완하여(~'23) 법제화 검토('24)
이행계획	('22.4Q) 주류 업계 의견수렴 및 간담회('22.10월) ('23.2Q) 주류 표시사항 QR코드 활용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23.6월~) *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서 제출('23.6월) ('24.2Q)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미흡점 보완 ('24.4Q) 법제화 검토

② 식품의 “무가염” 표시 기준 마련	
현황	▶ (규제) ‘무가염’ 표시는 ‘무염’ 표시기준(식품 100g 당 나트륨 5mg 미만)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식품. 아. 영양성분 3) 영양강조 표시기준 ▶ (애로) 치즈, 버터 등 염(나트륨)을 일정기준 이상 함유한 제품은 염 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없음
개선방안	▶ [고시 개정(23.5월)] 염 처리 여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염 기준과 별도로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이행계획	(‘22.4Q)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2.11~12월) (‘23.2Q) 고시 개정 완료(‘23.5월)

③ 보험업법령 개정사항 관련 정보제공 확대	
현황	▶ (제도) 금융위는 보험업법령 개정시 손해보험협회에 해당 내용의 전파를 요청하는 공문 송부 → 협회는 회원사에 보험업법령 개정 사항을 전파 ▶ (애로) 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가 아닌 외국계 (재)보험사 등에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가 부족
개선방안	▶ [제도 보완(‘23.2Q)] 손해보험협회가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외국계 (재)보험사 등에 수요조사 및 통지방법 협의 → 보험업법령 개정시 <u>비회원 사에게도 안내·통지</u>
이행계획	(‘23.1Q) 비회원사 수요 조사 및 안내 절차·방법 등 협의 (‘23.2Q) 절차·방법 협의 완료된 수요기관부터 공문 등으로 통지

④ 복합 만성 대사성 질환 의약품 급여대상 포함	
현황	▶ (규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되는 행위·약제는 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 (애로) 고도비만 수술요법은 급여대상에 포함되나 고도비만 치료 의약품은 급여 적용여부 불확실
개선방안	▶ [제도보완(‘22.4Q)] 비만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도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건강 보험 등재 신청시 <u>급여 평가절차 진행</u>
이행계획	(‘22.4Q) 보험등재 결정 신청 시 검토 추진

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현황	▶ (규제)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법령상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대법원 양형기준'상 산업재산권 침해죄의 양형기준은 최대 3년 징역 ▶ (애로) 지식재산 선진 국가에서 위조범죄가 실제 징역형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위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범죄를 적절하게 방지하기에는 불충분
개선방안	▶ [기준 정비('24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죄에 대한 <u>대법원 양형기준 정비</u>
이행계획	('22.3Q) 제8기 양형위원회에 지식재산권 침해죄 양형기준 정비 검토 제안 ('23.1Q) 지재권 침해죄 양형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3.2Q) 제9기 양형위원회에 지재권 침해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 ('23.3Q ~ 4Q) 양형기준 정비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부처간 협의 추진 ('24) 양형기준 정비 완료

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 마련	
현황	▶ (규제) 온라인 상표권 침해 적발시 해당 상품 판매를 매개한 자(오픈마켓 등)의 책임에 대한 상표법상 근거 無 ▶ (애로)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위조상품 거래도 증가 추세로 온라인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필요
개선방안	▶ [법 개정('23년)] 상표권 침해에 대한 <u>상품판매매개자(오픈마켓 등)의 간접책임 관련 법적근거 명시</u>
이행계획	('22.4Q) 상표권 침해주장자의 정보공개명령청구권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마련 ('23.1Q)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병합심리 추진 * 국회 제출 이후 개정 완료 시한은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